#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 1. 예금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 (1) 통장을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입금시에는 창구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입금금액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출금시에는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찾으신 금액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하여 출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한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실명확인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행 본 지점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시 정확한 수취인 명의와 수취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폰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시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제3자에게 착오 송금 된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수취인에게 예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등을 밟아야 하므로

(4) 계좌이체 실행전에 다시한번 정확한 계좌번호 및 수취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인이 무통장입금전표를 잘못 작성하여 송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되므로 정확한 수취인명의 및 수취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대출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 (1) 대출거래를 시작하실 때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 약정 체결시에는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적용방법, 연체금리 적용방법, 상환방법, 거치기간,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약정서에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대출 관련 각종 통지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통지(기한연장 포함), 이자기일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 내역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2) 담보를 제공(저당권 설정)하거나 보증을 할 경우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연대보증이란 은행(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해서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보증)에는 특정, 한정의 2가지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명확히 이해 하신 후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특정근담보(보증)란 특정한 거래계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연기된 때에도 담보(보증)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보증)하지 않습니다.

한정근담보(보증)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대출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보증)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보증)하지 않습니다.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 일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근저당권설 정 및 해지 비용은 담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은행에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매의사를 은행에 알리고 담보의 교체 또는 관련 대출금의 명의인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하여야 합니다.

### (4) 매수인의 유의사항

당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도인과

당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담보해지시 상환하여 할 채무합계액(채무인수시 인수할 금액)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확인서』는 발급시점에서의 상환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대출금 상환시점(채무인수 시점)에서 피담보채무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피담보채무확인서』금액을 잔금으로 정하고 다음 조건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예시
- ☞ 잔금은 은행에 상환하며, 상환시점에서『피담보채무확인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납입한다.
- ☞ 잔금은 매수인이 채무인수하며, 인수시점에서 『피담보채무확인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 도인이 납입한다.
- (5) 매도인의 유의사항

매수인이 대출금을 채무인수 하는 경우 매도인은 은행과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명의 를 변경해야 추후 동 대출금이 연체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채무자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금 연체시 채무자(매도인)의 신용악화
- ☞ 담보부동산이 경매실행 되었으나 경매대금으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잔존채무에 대한 상환의무

매수인이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 경우 대출금의 채무자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조건이 채무인수 조건인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매수인으로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6) 대출을 받은 후 만기일 이내라도 신용상태 악화, 이자미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7)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 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8) 대출 기한연장시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상환 요구 또는 금리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공무원,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 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펀드) 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1)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펀드는 고객님께서 맡긴 돈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여 그 결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2) 투자할 펀드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셔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투자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으며, 손실보전은 직접적·간접적 방법 모두 현행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3)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펀드의 특징이나 수익구조, 투자위험 등 펀드의 주요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펀드의 특징과 주요내용은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주요내용에 대한 판매직원의 설명 이외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꼭 판매직원에게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및 "비예금상품(펀드)설명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펀드의 운용에 관한 사항	투자목적,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위험
운용 실적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자산 구성현황
펀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수료, 보수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투자소득의 과세, 펀드가 부담하는 보
	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년도 요약재무내용, 운용자산
	규모
기 타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펀드공시에 관한 사항, 펀드의 매입
	및 환매 절차, 펀드의 해지에 관한 사항,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티

- (5) 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님은 자신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정보확인서작성을 통해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투자자정보는 고객님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은행은 투자권유가 불가능하며 펀드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6) 고객님께서 투자자정보를 제공해 주신 경우에도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펀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므로 이들 자산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 (7) 펀드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모든 펀드 공통.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며, 원본 전부 또는 일부 손실 가능.

가격변동위험(시장위험):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투자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가격 하락 위험.

개별기업위험: 투자 대상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악화로 인한 부도·파산 위험.

유동성위험: 거래량 부족으로 환금성에 제한이 발생하거나 가치 하락 위험.

금리변동위험: 금리 상승 시 투자채권의 가격 하락 위험.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으로 외화자산 가치 변동 위험.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 펀드투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과 시기를 분산해야 합니다.

투자대상의 다양화: 국내·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

투자시기의 분산: 일시에 전액 투자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나누어 투자.

(9) 펀드 선택 시 고려사항

투자자금 목적 (여유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 등)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펀드 유형

주식형: 주식 60% 이상 투자, 고위험·고수익

혼합형: 주식·채권 혼합, 수익성과 안정성 병행

채권형: 채권 60% 이상 투자, 안정적 수익

# (10)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선택

운용성과, 평판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 선정

판매회사의 전문성, 영업점 위치 등을 종합 고려

### (11) 펀드 보수와 수수료

구 분	내 용	수취방법
보수 - 운용보수	펀드운용의 대가	매일 펀드에서 수취
보수 - 판매보수	판매·계좌관리 서비스 대가	매일 펀드에서 수취
보수 - 수탁보수	보관·관리·감시 대가	매일 펀드에서 수취
보수 - 일반사무관리 보수	기준가산출 등 사무관리 대가	매일 펀드에서 수취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투자상담·계좌관리 대가	판매 시 고객이 일시 지급
수수료 – 환매수수료	일정기간 내 환매 시 부담	환매 시 일시 지급

# (12) 펀드 투자 관련 세금

거래소 상장 주식·선물의 매매손익은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손익·환차손익은 과세.

(13) 펀드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출금가능일자는 펀드마다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펀드 기준시간 15:30 → T+1(2영업일) 기준가 적용, T+3(4영업일) 출금 가능.

채권형펀드 기준시간 17:00 → T+2(3영업일) 기준가 적용 및 출금 가능.

MMF(개인용): 원칙적으로 익영업일 지급. 단, 은행 고유자금으로 일정 한도 내 당일 지급 가능.

해외펀드: 국내 펀드보다 환매·출금 기간이 길 수 있음.

- ※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전에 환매 시 수수료 부담 발생. 반드시 기간 확인 필요.
- ※ 신규입금·환매신청은 기준시간 이후 취소·정정 불가.

### 4. 신탁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 (1)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방법이 특정되는 신탁을 말합니다.

(2) 상품의 종류

구 분	내 용	상품명
파생결합증권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 (기초자산	ELS, ELB, DLS, DLB 등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다양한 수익구조)	
채권형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거액의 자금을 일시	CP, ABCP, ABSTB, 브라질
	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 (국가에서	채권, 물가연동채권 등
	발행하는 국채, 일반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주식형	주식은 주식회사의 출자증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ETF 등
	의 주주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 등	자문형신탁, 골드바신탁,
		WCT 등

- (3)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상품에 투자하기 전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상품의 특징이나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특징과 내용은 상품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주요내용에 대한 판매직원의 설명 이외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꼭 판매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고객님의 투자자 정보(연령 및 수입원, 투자경험, 금융지식, 투자성과 기대치 등) 제공을 통해 보다 적합한 상품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하신 투자자정보는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실 경우 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 (6) 자신에게 맞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투자기간,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 ※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 (7) 투자할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셔야 하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에게 귀속됩니다.

고객님께서 투자한 특정금전신탁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판매회사나 발행회사가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으며, 손실보전은 직접적·간접적 방법 모두 현행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8) 고객님께서 운용지시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 자산위험

주요 위험의 종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모든 자산 공통.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이 아니며, 실적배당 상품
	이므로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 존재 (투자자가 부

	담).
가격변동위험(시장위험)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자산(주식, ETF,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의 가격 하락 위험.
신용위험	채권, 파생결합증권, CP/ABCP 등 발행자의 부도, 파산, 채무불이행
	으로 원본 일부 또는 전부 상환 불가 위험.
개별기업위험	주식, ETF 투자 시 기업의 영업환경·재무상황 악화로 부도·파산 발생
	→ 주가하락·상장폐지 위험.
유동성위험	거래소 거래 자산의 경우 거래량 부족으로 환금성 제한 및 가치 하
	락 위험.
금리변동위험	채권, 채권형 ETF 투자 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격하락 위험.
환율변동위험	외화자산, 해외 ETF 투자 시 환율 변동으로 가치 변동 위험.
장외파생상품 거래위험	장외거래는 장내거래 대비 규제·감독이 약하고, 정산보증제도가 없
	어 거래상대방 파산 시 투자금 회수 불가 등 높은 신용위험 존재.

(9) 운용지시 자산의 과세 적용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이자·배당소득 → 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 파생상품 매매·평가손익 → 과세 제외. 단, 주식배당금·ETF 분배금은 과세.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손익  $\rightarrow$  과세(소득세 14% + 지방세 1.4%) 대상. 해외자산 과세제도는 별도 검토 필요.

(10) 해약 요청시 지급일자는 운용지시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자산의 유형	출금 가능일
파생결합증권	4영업일 (국내·해외증시 휴장 시 지연 가능)
ETF, 주식	4영업일 (국내·해외증시 휴장 시 지연 가능)
MMT	해지신청 당일
CP, ABCP, 환프리미엄	중도해지 불가, 만기지급
국내채권	3영업일 (채권매각 여부 따라 상이)
해외채권	각 채권 결제일에 따름 (채권매각 여부 따라 상이)
골드바신탁	3영업일 (국내증시 휴장 시 지연 가능)

※ 자산의 특성상 중도해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전 해지 시 수수료 부담 발생.

# (11)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신탁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ı· —	" •	

가입대상	국내 거주 개인
납입한도	매회 적립금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자유적
	립식)
적립기간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최소 5년 이상, 만 55세 이상까지)
연금지급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단위)
연금지급조건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일부 인출	적립·지급기간 중 가능.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가 적용 → 채권형은
	제3영업일, 안정형은 제4영업일 지급.
세액공제	해당연도 납입금액(최대 400만원)의 13.2%(조건 충족 시 16.5%)를 소득세
	액에서 공제. 2020.1.1~2022.12.31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은 200만원
	추가 공제. ISA계좌 만기해지금액 입금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주)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최대 300만원 한도.

# 5. 방카슈랑스 거래시 유의사항

- (1) 보험가입시 계약내용에 대한 오류상담이 이루어졌거나, 계약자의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보험계약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 (4)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5)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 받고 중요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보상하지 않는 경우, 고지의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조항 등을 꼭 읽어보고, 의 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6) 청약서 부본은 꼭 보관하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의 계약내용과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상의 내용이 청약서부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계약내용 을 확인하여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7)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경과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정해진 소정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단, 자전거보험 등 일부상품은 제외 약관참조)

- (8)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효력상실)됩니다.
- (9) 보험료 납입연체로 효력 상실된 보험계약은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효력이 상실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 받을 수 없으며, 효력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고객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위험정도(건강상태, 직업 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0)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특히 가입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1) 보험은 은행저축과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보험가입시에는 가입목적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12) KB국민은행은 보험판매대리점으로 판매업무 및 일부 지급신청업무만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제휴보험사와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청약업무와 일부 지급 금 신청업무만을 대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시 보험금의 지급의무, 만기환급금의 지급 등은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입니다.

### 6.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 (1)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한 후 카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현금출금(CD)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별도로 모집된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비스 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카드 도난·분실 시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24시간 운영), 홈페이지 (www.kbcard.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카드 사용 중 가맹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절차이므로 가맹점의 요청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표 작성 시 이용금액 등 정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 고 작성된 매출전표는 추후 청구대금 등 확인을 위하여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이 연체되거나(은행 영업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인출되지 못하여 연체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등 기타 사유로 회원님의 신용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6) 회원님께서 소지하신 카드를 모두 해지하신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회원님의 정보는 일정기간 보존됩니다.
- (7) 필요 이상의 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 또는 과도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 시에는 신용등급 또는 이용한도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 카드는 관련 법규상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 (9)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또는 재발급으로 인한 구 카드는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반환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10) 주소정보 등 회원정보 변동 시에는 즉시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회원님께서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이용대금명세서를 수신하시면 우편물 분실 예방은 물론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대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사용 시 할부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단계 또는 상품권 업종인 경우 할부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3) 회원님께서는 카드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에서 타행으로 변경할 경우 현금인출 기능이 정지됩니다. 기존 계좌에 대한 현금인출 기능을 원하시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4) 사고보상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항 다음의 경우는 카드의 도난·분실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②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③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단,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 ④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⑤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 ⑥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7.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 (1)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거래 후 반드시 로그아웃
- (2) PC방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에서는 비밀번호 노출 주의 및 스마트폰 연동 인증 이용
- (3) 비밀번호 주기적(3개월 정도) 변경
- (4) 보안매체 분실 시 즉시 하단의 경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

KB스타뱅킹으로 신고 [접속경로: KB스타뱅킹 전체메뉴(우측상단 =) > 고객센터 > 사고신고]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으로신고 [접속경로: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사고신고]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99-9999, 1588-9999) 및 영업점으로 신고

- (5)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
- ※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이 알기 쉬운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 분	예시
동일한 숫자 반복 또는 연속적으로 증감하는	0000, 1111, 2222, 3333 등 / 1234, 2345, 3456,
숫자	7654, 4321 등
연속적인 문자열(알파벳 순서 및 키보드 자판	ABCD, BCDE, DCBA 등 / ASDF, FDSA 등
배열 순서)	
개인고객: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또는 뒷자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인 경우 →
리가 동일한 숫자	7209, 0921, 4567 등
기업고객: 사업자등록번호상 앞뒤 4자리가 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인 경우 → 1234,
일한 숫자	7890 등
출금계좌번호상의 연속된 4자리와 동일한 숫자	계좌번호 020-1000376-67890인 경우 → 0201,
	2010, 0100, 7890 등
개인정보상 등록된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기타	전화번호 02-787-6189인 경우 → 0278, 7876,
연락처 번호의 지역번호, 국번 또는 뒷자리	6189 등

8. 전자금융 보안 10계명

- (1)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기
- KB국민은행과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의로 설치를 중단하거나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하면 안됩니다.
- (2)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금융회사 직원을 포함) 알려주지 않기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첩, 지갑 등에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절대 전자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나 메일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3) 금융계좌, 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과 같이 타인이 알기 쉬운 번호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4)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사용하기 스팸메일 본문이나 게시판, 대출사이트 등에 연결된 사이트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를 빼내가려는 사칭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5)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알려주는 휴대폰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기 KB국민은행에서는 계좌이체내역 같은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SMS나 앱 알 림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 (6) 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기 인증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보다 별도의 저장장치를 활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별도의 저장장치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7) PC방 등 공용 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자제하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PC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 금융거 래정보의 노출위험이 높습니다.
- (8) 바이러스백신,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이용하고 최신 보안패치 적용하기 백신프로그램과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은 PC의 보안을 위해 꼭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 도록 권장드립니다.
- (9)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 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 또는 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하기
- 꼭 필요한 메일이나 게시물만 실행하거나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으로 점검하여 바이 러스나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0) 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수준 이하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 대출취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신용도와 관련 없이 즉시 대출' 등과 같은 과도한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사기 금융사고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9. 스마트폰 보안 10계명
- (1)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 (2)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 (3)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 (4)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클릭하지 않기
- (5)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
- (6)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 (7)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 (8)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등)
- (9)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적용
- (10)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10.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 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콜센터(☎1301), 경찰(☎112), 금감원(☎1332)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

-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 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 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 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 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11.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금융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망자(피상속인)와 금융거래사실여부가 있었는지를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2)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삼성 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지방자치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3)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추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 ②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
- ③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④ 대리인의 신분증
- 을 지참하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대상은 사망자만 가능한가요?

사망자뿐만 아니라 준사망자(심신상실자 또는 실종자)도 법원의 심판문(성년(한정)후견(금치산선고), 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금치산 및 실종정보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심신상실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자는 2018.6.30일까지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임)

피성년후견인: 2013.7.1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됨

피한정후견인: 2016.1.11일부터 조회대상자에 추가. 단, 심판문상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만 가능

실종자 : 생사불명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법률상 기간 :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6) 의식불명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을 받은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